

2023년 2분기 예산의 이체·전용 내역 보고

1. 근거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.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 <시행 2020. 9. 10.>

2. 예산 이체 내역

- 해당없음

3. 예산 전용 내역

- 신청부서 : 아동청소년과 등 3개 부서
- 전용예산 : 3건 99,500천원
-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연 번	예 산 과 목			전용예산		승인 일자	예산 전용 사유
	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감	증		
1	아동 청소년과	아동친화도시조성	301-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	△5,000		5/10	○ 어린이날 행사 연기에 따른 홍보현수막 등 추가 제작,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및 발전차 추가 대여, 수유실 설치 등에 따른 행사 추진예산이 부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
		아동·청소년 행사	201-03 행사운영비		5,000		
2	복지 정책과	1인가구 안심홈 서비스	201-03 행사운영비	△12,000		5/22	○ '23. 2. 여가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신규 공모 선정에 따라 확정내시 105,680천원 통보(기 31,704 시 21,136 구 52,840) ○ '23. 4. 사업 수행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인력 2명 신규채용 및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, 2분기 기금 사비 미교부 및 추경 전 구비 마련성에 따른 5월분 인건비 부족 발생에 따라 예산 전용
		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	307-05 민간위탁금		12,000		
3	홍보 미디어과	구청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	201-01 사무관리비	△12,500		6/21	○ 구정아념 및 비전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 청사 외벽 홍보판 교체·설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당 세부사업의 기편성된 홍보판 제작·교체 및 홍보판 정비·관리 예산 일반운영비 일부(32,500천원)와 ○ 소식지 등 시정 홍보를 조건으로 영등포 소식 발간 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(50,000천원)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되는 일반운영비(구비)를 전용
			201-02 공공운영비	△20,000			
			401-01 시설비		82,500		
		영등포 소식 발간	201-01 사무관리비	△50,000			